

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---

신청인	① 조합명(법인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주 소	④ 전화번호

신청내용	⑤ 가축시장명		⑥ 개장 일자	
	⑦ 소 재 지		⑧ 거래 대상 가축의 종류	
	⑨ 거래방법		[]전자경매 []수기경매 []중개	
	시설 현황	⑩ 계류시설	면적(㎡):	수용가능 가축의 마릿수(마리):
		⑪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	차량용(터널형, 개):	대인용(밀폐형, 개):
		⑫ 체중계	큰소·송아지 겸용(개):	
			큰소(개):	송아지용(개):
		⑬ 관리 사무실	면적(㎡):	

「축산법」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시장의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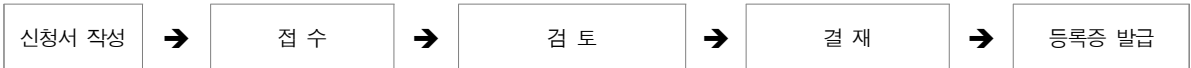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1. ⑤란에는 가축시장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 적습니다.
- 2. ⑩ 계류시설란의 수용가능 가축의 마릿수에는 큰소(600kg 이상) 기준으로 적습니다.
- 3. ⑫ 체중계란의 큰소는 600kg 이상, 송아지는 600kg 미만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
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)